

광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나63305(본소), 2020나63312(반소) 판결

[점유회수 · 유치권 부존재 확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1. 1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가단1023(본소), 2020가단 51447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받은 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본소에 대한 원고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원고 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본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

별지목록

등록 번호 :

형식승인번호 : 5-02-0097-00-00

건설기계 명 : 굴삭기

규 격 : 28.3톤

차 대 번 호 :

형 식 : 325DL

년 식 : 20142008

최종 소유자 : (20%), (80%) 사용 본거지 : 광주 광산구 별 유체동산의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상가

- 이 상 -

끝.

